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전자관보 제2090호(2024.12.26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주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대수를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하고,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대수를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“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(24.12.26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주 요 내 용 =

가. 주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를 종전의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 (별표3 제1호)

나.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**보유차고의 면적기준**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고 내 주차율, 장거리 영업 비중을 고려하여 **시·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**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 적용 (별표3 제2호)

※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※ 불 임 : 전자관보 1부. [끝]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오 성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 210호 (2024.12.26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